

3자녀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거주자	1	1	1	1	4
	경기도 거주자	0	0	0	0	0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특별공급	서울특별시 거주자	1				1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을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음.

□ 주택형별 3자녀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50%는 서울특별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는 인구비율(통계청 통계정보시스템의 2006년도 내국인 인구통계에 의함)에 따라 경기도 거주자 40%, 인천광역시 거주자 10%에게 각각 공급함.

1) 3자녀 무주택 세대주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6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 8. 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 세대주[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 존비속인 세대원 포함)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인 자로서 만 20세 미만 직계자녀 3명 이상을 둔 자.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신청할 수 없음.

□ 청약예금가입 여부 및 과거에 당첨된 사실여부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함.(단,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중 재당첨제한기간내에 있는 자는 제외)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함.

□ 입주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을 갖춘자에게 건설량의 3%를 특별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 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함.

□ 3자녀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당첨은 무효처리함.

□ 3자녀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함.

-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신청시 (배우자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신청서 및 배점기준표(접수장소에 비치, 무주택 및 당해 시·도 거주기간 등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8. 6) 현재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무주택 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본인의 주민등록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주민등록초본 1통(본인이 인정받고자 하는 거주기간 또는 세대주기간이 주민등록등본만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함) ○ 피부양 직계존속의 주민등록초본(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 과거 3년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한함)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1통(아래 해당자에 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의 주민등록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자 ② 미혼·이혼·사별·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능한 자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1통 ※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기 바람.
제3자 대리신청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 위임용) 1통 ○ 청약자의 인감도장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 ○ 대리신청자의 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접수장소에 비치)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전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3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함.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된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 2005. 7. 1일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자녀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우선순위 배점표 (신청시 배점표에 자필작성 및 점수 기재)

평점 요소	총 배점	배 점 기 준		비 고
		기 준	점 수	
계	100			
자녀수(1)	40	4자녀 이상	40	○ 자녀(입양아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만20세 미만인 경우만 포함
		3자녀	35	
	10	2명 이상	10	○ 영유아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인 자녀
		1명	5	
세대구성(2)	10	3세대 이상	10	○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 등본에 등재(직계존속은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3세대는 직계존속으로 구성)
		2세대	5	
무주택기간(3)	20	1대주 나이가 40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10년 이상	20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 배우자, 직계존비속을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세대주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무주택자 기준은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따름
		세대주 나이가 35세 이상이면서 무주택기간 5년 이상	15	
		무주택기간·5년 미만	10	
당해 시·도 거주 기간(4)	20	10년 이상	20	○ 세대주가 당해지역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시는 특별시·광역시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당해 시·도로 봄)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1년 미만	5	
(1), (2) : 주민등록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		(3) : 국토해양부 등 주택소유 전산검색으로 확인		(4) :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초본으로 확인
* 동점자 처리기준 : 1.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2. 자녀수가 같을 경우 세대주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자녀수에는 입양자녀도 포함됨.(단, 임신중에 있는 태아는 제외됨.)

□ 청약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점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상기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위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상이 및 유주택자,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에 당첨되어 재당첨 제한기간내에 당첨 받는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람.

□ 세대주인정기간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에 의하여 산정한다. 다만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주민등록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말소 등으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기간을 전후하여 세대주로 등재되어 있는 기간을 합산하여 이를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인하여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에는 변경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을 변경후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에 합산하여 세대주의 세대주인정기간으로 한다.

- ① 세대주가 사망한 경우
- ② 세대주가 결혼 또는 이혼한 경우
- ③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

2)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7항 및 제8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입주자 모집공고일(2008. 8. 6)** 현재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에 거주하는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기간이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주민등록등본상 출생일 기준, 입양의 경우에는 입양신고일)하여 자녀가 있는 무주택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하여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인 세대원(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직계존비속인 세대원 포함)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세대주] 로서 다음의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단, 재혼인 경우 출산자녀 여부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내에 출산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함]

* **소득기준 : 월평균소득 2,572,802원이하 (단, 4인 이상 세대의 경우 3,675,431원이하)**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당첨된 자는 재당첨 제한기간 동안에는 신청할 수 없음.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인 이상인 세대는 4인가구 월평균소득을 말한다.)의 70퍼센트(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10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여야 함.[단,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통계를 통계청에서 발표하기 전에는 전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기준으로 함.]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요건을 갖추어야 함.

- ①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규칙 별표1의2의 예치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였을 것
- ② 청약예금제도실시지역에서 입주자를 모집하는 경우로서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규칙 별표1의2의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하였을 것

□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의 거주지역요건 기준은 규칙 제4조, 제10조 제3항 및 제30조에 따른 거주지역요건 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신혼부부 보금자리주택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중복신청이 가능하며, 중복 당첨된 경우에는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당첨은 무효처리함.

□ 신혼부부 보금자리 특별공급 신청접수는 1세대 1건만 가능하며, 2건 이상 신청한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함.

- 입주자 선정방법

① 상기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순위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1. 혼인기간이 3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2. 혼인기간이 3년 초과 5년 이내이고 그 기간에 출산하여 자녀가 있는 자
- ② 제1항에 따른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함.
 - 1.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주택공급신청자 중 규칙 제4조 제3항에 따른 수도권 거주자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2. 미성년인 자녀 수가 많은 자
 - 3. 미성년인 자녀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③ 제2항의 자녀수를 선정할 때 재혼한 경우에는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한 미성년인 자녀도 포함하여 선정한다.

- 자격입증 구비서류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신청서 (배우자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서(접수장소에 비치)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8. 6) 현재 무주택 세대주 입증서류(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 기타 무주택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등) ○ 청약통장가입확인서(청약통장가입 해당은행에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 무주택 서약서(접수장소에 비치) ○ 주민등록등본 1통 (본인의 주민등록에 배우자가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 건강(의료)보험증 사본 1통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이 표시)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지참 ○ 인감도장 ○ 인감증명서(용도:주택공급신청용) 1통
제3자 대리신청서 추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대리신청자의 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접수장소에 비치)

- 소득입증 구비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사본(직인날인) 혹은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서(재직증명서 첨부)	* 해당직장
	신규취업자	* 금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 세무서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해당직장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 사본	* 세무서
	신규사업자 등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 또는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국민연금관리공단 * 세무서

법인사업자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 * 법인등기부등본	* 세무서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 사업소득원천징수 영수증	* 세무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 수급자 증명서	* 동사무소
비정규직근로자 일용직근로자	* 총급여액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조서(직인날인)	* 해당직장
무직자	*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접수장소

- 상기 서류는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2008. 8. 6) 이후 발행번호로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분리세대는 배우자의 소득입증서류 포함)의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가구당 소득의 산정에 포함되는 대상은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20세이상 세대원으로 하되, 주민등록표상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세대가 분리된 배우자도 세대원으로 간주함.[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

■ 일반공급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08. 8. 6)**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세대주 또는 20세이상인 자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의 동포) 및 외국인 포함】
-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이외의 지역에서 청약예금을 가입한 후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자는 신청일 현재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변경하여야 청약이 가능함.
(단,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거주자가 주거지 변경없이 청약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증액변경없이 거주지역 해당 청약예치금으로 청약 가능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계좌 재사용이 불가함.
-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드를 무효 처리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척시 1순위 청약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동일순위 경쟁자중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거주신청자가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거주자 신청분은 입주자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과거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에 기 당첨된 자 또는 기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재당첨제한기간이 경과되어야만 1,2,3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순위별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구분	순 위	면적구분 (전용면적)	청약관련 입주자저축 및 신청자격	거주 구분	접수 일자	청약접수 장소/시간	추첨 및 당첨자발표
민 영 주 택	1순위	가점제/추첨제 신청자격	□ 가점제 :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세대[청약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 추첨제 : 1주택을 소유한 세대[청약자 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만 60세 미만 직계존속(배우자 직계 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 포함]에 속한 분 ※1주택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는 가점제 1순위 청약이 불가하며, 청약신청시 자동으로 추첨제 1순위 대상으로 접수되고 2순위 청약은 불가함 ※ 만 60세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시에는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2주택 이상시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에 대하여 감점 적용됨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서울 특별시 / 인천 광역시 및 경기도	2008 8.12	□ 접수 장소 ○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 : www.kbstar.com ○ 국민은행외 청약통장 가입자 : www.ap2you.com	□ 일시 : 2008. 8.21 □ 장소 : 당사 분양사무소 및 래미안 홈페이지 □ 파이낸셜 뉴스 신문에 게재
		85㎡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납입인정 금액이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1980. 8. 29 이전 국민은행(舊주택은행)의 재형저축에 가입하였거나 '81. 5.22이전 국민주택 청약부금 가입자중 청약자격 1순위자로서 최초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전용면적 85㎡이하 또는 102㎡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최초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포함)이나,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청약자격 1순위가 되신 분				
		전주택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한 분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후 신청일 현재1년이 경과한 분 (전용면적 85㎡ 초과주택에 한함)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된 1순위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자로서 다음중 1에 해당되는 분은 1순위 청약불가 (2순위로 청약가능) ○ 과거 5년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청약자본인,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본인 또는 배우자의 세대원 중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인 세대원 전원의 당첨사실 포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분 ○ 2002.9.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 가입자 중 세대주가 아닌 분(2002.9.5 포함) ○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 2호 또는 2세대이상의 주택을 소유[청약자 본인,배우자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 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사실을 포함]한 세대에 속한 분 (* 주택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참조)				
	2순위	가점제/추첨제 신청자격	□ 별도 가점제 신청자격 제한없음(모든청약자 가점제로 청약접수) □ 청약자는 가점제/추첨제 선택 청약이 불가하며,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으로 자동 전환됨		2008 8.13		당첨자 명단은 상기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 서면통지는 하지않음. (전화문의는 착오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85㎡ 이하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납입인정금액이 전용면적 85㎡이하 민영주택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 □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 납입금을 6회이상 불입한 2순위자로서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청약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분으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일까지 해당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분				
		저층태형	□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한 분				

	인터넷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각 주택형에 신청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후 신청일 현재6개월이 경과한 분	
3순위	전주택형	□ 1순위 및 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분	2008 8.14 □ 접수장소 : 국민은행 인터넷 (www.kbstar.com) □ 접수시간 : 08:30 ~18:00

- 주택소유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분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신청 시 은행에서는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시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징구하여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기 바람.
- 1,2순위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노약자, 장애우 등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가능함.(창구 접수시간(09:30 ~ 16:30))
- 3순위 청약신청은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며, 국민은행 본/지점에서 청약가능함.(창구 접수시간(09:30 ~ 16:30))
- 가점제 개요(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 당첨사실 및 주택소유사실 판단대상 : 청약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포함), 청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같은 주민등록등분에 등재된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
- 청약관련예금 변경(전환)시 경과기간 및 요건(전용면적 기준)
 - 85㎡ 초과 102㎡ 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관련예금 가입자의 경우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신청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 요건
 - 1) 청약예금(청약부금)은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85㎡ 이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분에 한함)에 가입하여 가입일(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경우는 전환일, 이미 신청가능 전용면적을 변경한 경우는 변경일)로부터 2년 경과시마다 횟수에 관계없이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이 가능하며, 이 경우 금액은 현행 지역별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야 함.
 - 2) 94.8.15이전 청약저축에 가입한 제1순위로서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 전일까지 85㎡ 이하 청약예금으로 차액을 추가 예치하고, 전환하면 제1순위 자격으로 청약이 가능함.
 - 신청가능 전용면적 변경한 자 신청요건
 - 1)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 2) 큰 주택 규모로 변경한 자 : 신청일 현재 1년이 경과한 자는 변경 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단, 1년 미만인 자는 변경 전 전용면적으로만 신청가능)
 - 3)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가능

청약가점제 적용안내

-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아야 함.
- 2007. 9 .1일부터 시행되는 청약 가점제에 의하여 동일 순위 간에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일정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구 분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85㎡ 초과
가점제	75%	50%
추첨제	25%	50%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감점점수의 산정기준표(주택공급규칙 별표 1)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함.
- 청약가점항목 및 점수 : 무주택 기간(32점), 부양가족수(35점), 입주자저축 가입기간(17점) 등 총점 84점.
- 가점제에서 탈락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자동으로 추첨제 대상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점수 입력은 청약자 책임(당첨자 결정 후에 당첨자의 청약내용에 대한 정확성을 확인하게 됨)이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됨으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인터넷청약 절차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금융결제원(www.apt2you.com), 국민은행(www.kbstar.com)에서 운영하는 "인터넷청약 가상체험관"을 활용하시기 바람.

■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가점항목	가점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등
① 무주택기간	32	1년미만	2	8년이상 ~ 9년미만	18	○ 주민등록등본 (배우자분리세대시 배우자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을 확인)
		1년이상 ~ 2년미만	4	9년이상 ~ 10년미만	20	
		2년이상 ~ 3년미만	6	10년이상 ~ 11년미만	22	
		3년이상 ~ 4년미만	8	11년이상 ~ 12년미만	24	
		4년이상 ~ 5년미만	10	12년이상 ~ 13년미만	26	
		5년이상 ~ 6년미만	12	13년이상 ~ 14년미만	28	
		6년이상 ~ 7년미만	14	14년이상 ~ 15년미만	30	
		7년이상 ~ 8년미만	16	15년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가입자 본인)	5	4명	25	○ 주민등록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	-	
③ 입주자 저축가입기간	17	6월미만	1	8년이상 ~ 9년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으로 계산됨)
		6월이상 ~ 1년미만	2	9년이상 ~ 10년미만	11	
		1년이상 ~ 2년미만	3	10년이상 ~ 11년미만	12	
		2년이상 ~ 3년미만	4	11년이상 ~ 12년미만	13	
		3년이상 ~ 4년미만	5	12년이상 ~ 13년미만	14	
		4년이상 ~ 5년미만	6	13년이상 ~ 14년미만	15	
		5년이상 ~ 6년미만	7	14년이상 ~ 15년미만	16	
6년이상 ~ 7년미만	8	15년이상	17			

		7년이상 ~ 8년미만	9	-	-
--	--	-------------	---	---	---

■ 가점항목별 적용기준

-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입주자저축 가입자를 포함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을 말한다] 전원이 주택을 소유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하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아래 소형·저가주택 소유자를 무주택자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한다)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한 자로서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11조의2 또는 제12조에 따라 60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한다)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소형·저가주택의 주택가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본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호적등본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세대원(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한다)을 말한다)으로 한다.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순위기산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점수는 청약신청시 자동부여함

■ 세대원 주택소유에 따른 감점 적용 기준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1주택을 초과하는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시 무주택으로 인정은 되나 2주택 이상인 경우 상기 감점기준 적용함)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외 소유 주택 : 2주택 이상인 경우 주택수마다 5점씩 감점
- 감점점수가 전체 가점점수보다 많은 경우 가점점수는 "0점"으로 산정됨.

청약신청접수 방법

- 입주자 선정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순위에 의함.
- 특별공급(3자녀 무주택세대주, 신혼부부 보금자리 주택) : 해당 청약신청 기간에 당사 분양사무소에서 청약신청하여야 함.
- 일반공급
 - 공통 : 층별, 동별, 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짜에 접수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3순위까지 청약접수결과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1,2순위 : 층별, 동별, 향별 구분없이 주택형별로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경기도 거주자를 구분하여 청약순위별로 같은 날짜에 접수하며, 선순위 신청접수결과 일반 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음 (단, 1순위에 한해 1주택을 소유한 경우 청약접수시 1순위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분류하여 청약접수함)
 - 3순위 : 종전대로 청약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함
- 인터넷 청약신청 방법

인터넷 청약신청 서비스 안내		국민은행 및 금융결제원(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서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은행 영업점 방문 없이 간편하고 편리하게 청약신청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넷서비스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니 많이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국 민 은 행 (舊 주택은행 포함)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국민은행을 제외한 은행에 청약통장을 가입하신 분
이용 대상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2순위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순위가 발생한 분 • 3순위 : बैं킹계좌에 3순위 청약신청금 이상의 잔고가 있는 분 (단, 국민은행 통장거래 고객에 한함)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인터넷 बैं킹서비스 이용신청을 하신 분 	
이용 방법 및 절차	인터넷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www.kbstar.com) 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인터넷 청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약통장 가입은행 또는 금융결제원(www.ap2you.com)

※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함.

□ 은행 창구 방문 청약신청시 구비사항

구 분		구 비 사 항	
본인 신청시 (배우자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서(1,2순위 : 청약통장 가입은행에 비치, 3순위 : 국민은행에 비치) □ 청약예금, 청약부금 통장(1,2순위자에 한함) □ 예금인장(1,2순위자에 한함) 또는 서명 □ 배우자가 신청시 배우자 입증서류(배우자 관계 확인이 가능한 주민등록등본 등) □ 청약신청금(3순위 신청자에 한함) □ 본인확인증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본인 또는 배우자)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제3자 대리 신청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직계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아래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주택공급신청용) :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양식은 신청접수 장소에 비치) □ 대리신청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 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가능
------------	---

※ 청약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하여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음.

□ 3순위 청약신청금

구분	전용면적 85㎡ 이하	전용면적 102㎡ 초과 135㎡ 이하	신청금납부방법
청약신청금	200만원	400만원	창구청약시 신청금액에 해당되는 수도권지역 소재 금융기관 발행 자기앞수표 1매로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3순위 청약신청금 환불

환불기간	환불장소	구 비 서 류	
당첨자발표 익영업일 (2008. 8.22)이후 (평일 09:30 ~ 16:30)	청약접수한 국민은행 본/지점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신청 접수(영수)증 (당첨자는 원본 및 사본 추가제출) ○ 신청서 사용인감 또는 본인·배우자 서명(서명으로 신청한 분에 한함) ○ 주민등록증
		제3자 대리 환불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 환불시 구비서류 외에 추가구비 사항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청약신청금 환불위임용) 1통 [단,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인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제3자의 주민등록증(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 3순위 청약신청금에 대한 환불금은 별도의 이자가 발생하지 않음

※ 3순위 당첨자의 신청금은 계약금의 일부로 대체되지 않으니 청약접수한 국민은행 본지점에서 환불받아 별도로 계약체결 하여야 함

[단, 지정계좌(청약자 본인의 국민은행 계좌에 한함)로 이체 신청하신 분은 당첨자 발표 익영업일에 자동 이체됨]

입주자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 아래와 같이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를 결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

구분	선정방법 및 동·호수 결정
특별공급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8. 8.11 (15:00) 당사 분양사무소에서 특별공급 신청자의 입회 하에 동·호수를 결정하되, 신청자가 없거나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함. □ 특별공급 대상자는 별도의 예비당첨자를 선정하지 아니하며, 부적격세대는 일반 예비당첨자에게 관계법령에 의거 공급함 □ 과거 특별공급으로 당첨된 자는 당첨이 취소될 수 있음
공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민은행 컴퓨터 입주자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없이 1, 2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3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함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1,2순위 청약자는 모두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함. (단, 1순위자중 1주택 소유자는 청약접수시 자동으로 1순위 추첨제 대상으로 분류되어 1순위 가점제 낙첨자와 함께 입주자를 선정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일반공급세대수의 75%를 가점제로, 나머지 25%를 추첨제로 공급 ○ 전용면적 85㎡ 초과: 일반공급세대수의 50%를 가점제로, 나머지 50%를 추첨제로 공급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 일반공급세대수의 20%까지 추첨의 방법에 의하여 예비당첨자를 선정(3순위까지 전체 신청자수가 일반공급세대수의 12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예비당첨자로 선정)하며, 선순위 당첨자 중 미계약 또는 계약취소자 발생시 예비당첨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 등을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함(추첨에 참가하여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됨) □ 동일 신청자격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서울특별시 주택건설지역 거주 신청자가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 거주 신청자보다 우선하며 인천광역시, 경기도지역 거주자로 신청하신분은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예비당첨자 명단 및 동·호수 추첨일시는 당첨자 발표시 견본주택에 별도 공고함.

* 재개발 조합원에 기 배정된 동·호수를 제외한 나머지 동·호수에 대하여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신청자를 대상으로 동·호수를 결정함.

인터넷, ARS 당첨자 발표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 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발표장소 등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국민은행	금융결제원
인터넷	이용 방법	금융결제원홈페이지(www.apt2you.com)접속 ▷ 청약센터 ▷ 당첨자조회
	이용 방법	국민은행 홈페이지(www.kbstar.com)접속 ▷ 부동산 ▷ 분양관 ▷ 사이버청약지점 ▷ 당첨확인
전화(ARS)	이용 기간	2008. 8.21 ~ 8.30 (10일)
	이용 방법	먼저 이용전화번호를 누르신 후 안내 말에 따라 청약자의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연속하여 누르세요
	전화 번호	전화 1588-9999 (서비스코드 701)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국민은행 주택청약 신청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자
	제공일시	2008. 8.21 (08:30) *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화 번호	전화 1369(서비스코드 5#)

계약체결안내 및 유의사항

□ 계약체결 기간 및 장소

대상	계약체결기간	계약체결장소	비고
			○ 지정 계약기간내 계약금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내 계약이체결

정당 당첨자	2008. 8.27 ~ 2008. 8.29 (3일간)	당사 주택전시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동 717번지 주택전시관)	시에는 당첨 효력이 상실됨 ○ 정당당첨자 계약종료 이후 미계약세대 발생시 예비당첨자에게 순번에 따라 우선공급하고 잔여 세대에 대하여 자격제한 없이 임의 분양함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전산검색 등 청약자격 유무 판단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 이후라도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고, 미제출시 계약이 취소됨
--------	--------------------------------------	---	---

□ 계약시 구비사항		
구분	구 비 사 항	
공 통	○ 주택공급신청접수증 및 영수증(단, 인터넷 청약신청 당첨자는 제출 생략) ○ 계약금(수도권소재 금융기관에서 발행한 자기앞수표 1장으로 준비하시기 바람) ○ 본인확인 및 신청자격 확인서류(거주지역, 가점항목별 입력내용 확인서류 등) ①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② 주민등록등본1통, 초본 1통(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및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③ 재외포도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1부(또는 국내거소사실증명서 1통) ④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사본 1부(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1통) ⑤ 가족관계증명서 1통(미혼·이혼·사별·배우자와 분리세대 등 최초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 기준으로 배우자 유무확인이 불가능한 자의 경우에 한함) ⑥ 주택소유현황 서약서(건본주택 비치)	○ 계약자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계약용) 1통 ○ 인감도장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서류 ①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관리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② 무허가건물 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③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주택공시가격 증명원 등) ④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제3자 대리 계약시 추가구비사항	○ 본인외에는 모두 제3자로 간주하며(배우자, 직계 존·비속 포함) 상기 구비서류 외에 아래 서류 추가 제출 ① 계약자의 인감증명서(용도 : 아파트 계약위임용) 1통 ② 계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계약장소에 비치) ③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및 인장	

※ 상기 증명서류는 계약일 기준 3개월 이내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 발급시 용도를 기재하지 않고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계약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람.(외국인등의 경우 인감증명서, 인감도장은 공급신청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해야 함)

※ 2005.7.1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주민등록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란을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성명 및 관계"란에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계약조건 및 유의사항

○ 사업주체에서 당첨자에 한하여 세대주, 거주지역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와 다르게 당첨되어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확인되는 경우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관리됨

○ 계약체결 후에도 다음중 1에 해당될 경우 당첨권의 박탈과 함께 공급계약은 취소되며,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 계좌의 재사용이 불가함.

- ① 청약가점항목(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소유현황 등) 기재내역을 허위 또는 착오 기재한 경우
- ② 1순위 당첨자중 최초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2주택이상 소유자로 판명될 경우
- ③ 1순위 당첨자중 과거 5년이내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세대에 속한 자
- ④ 2002. 9. 5 이후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가입한 1순위 당첨자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가 아닌 자로 판명된 경우
- ⑤ 1,2,3순위 당첨자중 과거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에 기당첨된 자 또는 기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 중 재당첨 제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자
- ⑥ 특별공급 당첨자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상기 기준에 의거 주택소유여부 및 과거당첨사실 유무 판단시 당첨자 본인,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전원포함)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 및 당첨사실을 포함함.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일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각각 동일한 청약관련 예금으로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경우에 한함)

○ 당해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체결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자로 전산관리하며, 향후 투기과열지구 청약신청시 1순위 청약신청에 제한을 받음.

○ 신청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될 경우 당첨을 취소하고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며, 계약은 취소하고 당첨자로 관리함.

○ 3자녀 특별공급당첨자 중 다음에 해당될 경우 향후 특별공급 자격박탈 및 일반청약 자격이 제한됨.

- ①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및 계약체결 후라도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 기간이 사실과 다르거나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당첨되어 부적격자로 통보된 이후 14일간의 소명기간 안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취소와 함께 공급계약이 취소됨)

○ 지정 계약기간 내 계약금 또는 일부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관련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될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함.

○ 주민등록법령 위반 및 청약관련예금 등을 타인명의로 가입하거나 가입한 자의 청약관련예금 등을 사실상 양도받아 공급신청 및 계약시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체결된 계약은 취소함.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체결하여야 함.

○ 도배, 도장, 가구, 타일, 주방용구, 위생기구공사 등에 대해서는 국토해양부 '입주자 사전점검 운영요령'에 따라 입주 전에 입주자의 사전점검을 실시할 예정임.

○ 건본주택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공용부문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승강기의 용량, 탑승위치 등)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의 내용에 준하며, 이로 인해 시행 또는 시공자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27조"에 준함.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함.

□ 주택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부 등본상 등기접수일(미등기주택은 건축물관리대장 등본상 처리일)기준임.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됨.

□ 주택소유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된 자가 판명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시행사가 소명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14일)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등 기한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함)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조 제3항]
 - 검색대상 :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 [직계존비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부 등본, 건축물대장 등본 등에 등재된 전곡 소재 주택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 주택처분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 1) 건물등기부 등본 : 등기접수일
 - 2)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 3) 기타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나 입주자모집 승인권자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1) 사용검사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2) 85㎡이하의 단독주택
 - 3)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승인을 얻어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20㎡이하의 주택(아파트 제외)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2호 또는 2주택 소유자는 제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않는 폐가 또는 멸실되어 있거나, 주택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소형 저가주택 1호를 10년이상 계속 보유한 경우의 특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2)]
 - 「전용면적 60㎡이하이며, 공시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1주택(소형저가주택)」 소유에 대해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분은 60㎡초과 민영주택 또는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됨(*장기간보유특례)
 - (현재 : 소형저가주택 소유자) 입주자모집 공고일 기준으로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보유한 경우 → 현재소형-저가주택을 10년미만 보유한 경우 : 특례에 해당 안됨.
(따라서, 유주택자이며 종전 무주택 기간은 포함되지 않음)
 - (현재 : 무주택자) 종전에 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한 후 계속 무주택자로 있는 경우, 두 기간을 합해 10년 이상 경과한 경우 → 해당 소형저가주택의 보유기간도 무주택으로 간주함
 - ※ 주택공시가격 적용기준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이하 “주택공시가격”이라 한다) 중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르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에는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단, 2007.8.31 이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도 주택공시가격을 주택가격으로 봄)

입주예정자에 대한 용자안내

- 대출관련 세부내용은 분양사무실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할 예정이며, 용자 금액은 향후 정부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중도금 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등 제반경비는 계약자의 부담으로 하며, 금융신용불량거래자 등 계약자 사정에 의한 중도금 대출불가자는 남부조건에 따라 계약자가 직접 중도금을 납부해야한다.(미납시 연체료 가산됨)
- 본 아파트는 당첨된 해당 동호수 분양대금 중 계약금(총 분양금액의 20%) 납입 후 총 분양금액의 40% 대출이 가능하나, 당첨된 주택의 공급금액, 개인의 신용상태 및 소득 등에 따라 대출한도가 변동될 수 있으니 은행에 문의하시기 바람
- 이에 따른 대출 불가 및 축소 등의 사유로 인한 개인적인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와 관련된 책임은 사업주체가 지지 않음

입주예정일 안내

- 입주예정일 : 2010년 11월 (정확한 입주일은 추후 통보 예정)
(단,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 되지 않음)

입주자 사전점검 안내

-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제8조 제6항에 의거 입주예정자가 사용검사일 이전(정확한 사전점검 예정일자는 추후 통보함)에 사전점검 할 수 있도록 함.
- 사전점검대상 :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

주택보증에 관한 사항

■ 연대보증인 : 대한주택보증(주)

보증 기간	보증 금액	보증서 번호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로부터 소유권보존등기일까지	₩67,681,040,000	

■ 대한주택보증(주)의 보증약관중 보증범위 및 보증대상 제외사항

- 보증의 범위 : 보증회사는 주택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된 경우에 당해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의 환급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의 납부
 - 보증회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채무에 대하여는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합니다.
 -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기타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채무
 -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차명, 이중계약등 주택공급에관한규칙에 의한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획(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획을,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획을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획을 말한다)에 납부하지

아니한 입주금

-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통보한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초과하여 납부한 입주금
 -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기타 중속채무
 -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 11) 보증사고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택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반환하여야 할 입주금
 - 12) 주택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 13) 입주자모집공고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홀오토, 발코니샤시, 마이너스오피션 부위, 기타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 14) 보증채권자가 제6조의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기타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 보증회사가 제8조에 의거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 내지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제1항 제7호에 해당하는 입주금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
 -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납부한 잔금중 전체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아파트명	감리구분	업체명	감리금액	VAT구분	비고
레미안 전동2차	건축, 기계, 설비, 토목	명승건축(주)	2,574,030,000원	별도	○ 감리금액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전기	(주)세광TEC	523,339,223원	별도	
	통신, 소방	(주)아이비엔지니어링	481,120,000원	별도	

분양대금 납부계좌 안내

■ 분양대금 및 발코니 확장 및 선택옵션대금 납부계좌는 별도 고지를 생략하오니 분양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은행계좌로 입금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뱅킹, 폰뱅킹, 타행입금 가능)

유의사항

1. 청약 시 신청한 내용과 민영주택공급신청접수(영수)증(창구청약자 : 공급신청서에 기재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서상 단말기로 인자된 내용)과의 일치여부를 반드시 대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하거나 청약예금 예치금액을 보다 작은 규모의 예치금액으로 변경하여 당해 주택에 공급신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자에 한하여 가능하며 향후 다른 주택을 공급 신청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변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선순위 청약접수결과와 신청자가 일반공급세대수를 초과하더라도 예비당첨자 선정비용(일반공급세대수의 20%)에 미달할 경우 차순위 접수를 받을 수 있으므로 청약신청전 청약경쟁률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본 주택의 당첨자(3순위 당첨자 및 계약미체결자 포함)는 향후 신청주택에 따라 일정기간 청약순위가 제한됨
5. 공급신청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취소나 정정을 할 수 없음
6. 본인 또는 배우자가 주택공급신청을 하는 경우 인장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서명>은 신청자의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고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반드시 접수창구에서 은행 직원입회 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하여야 함
7. 청약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함
8.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다소 지연 될 수 있음
9. 이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번조 등의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시에는 법에 따라 처벌 받게 됨
10. 세대 당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절차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상호정산하기로 함
11. 본 주택은 세대별 쓰레기 투입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음
12. 주택공급신청서의 <주택형> 또는 <형>은 평형으로 기재하지 말고 입주자 모집공고상 <주택형(㎡)>으로 기재하여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3. 주택규모 표시방법을 종전의 평형대신 넓이표시 법정단위인 제곱미터(㎡)로 표기하였으니 신청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 평형환산방법 : 형별면적(㎡) × 0.3025 또는 형별면적(㎡) ÷ 3.3058
14. 건본주택(모델하우스)내에 시공된 제품은 "갑등"의 귀책사유가 아닌 자체의 품질, 품귀 등으로 시공 중 동질, 동가 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음
15. 각종 인쇄물(카탈로그, 공급간지 등)의 컴퓨터그래픽 및 홍보물(신문광고 등)상의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와 건본주택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 시설물, 단위세대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여건에 따라 실제 시공과는 다를 수 있음
16.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국토해양부 주관 30145-26905)에 의거 임의로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에 건본주택 내부를 영상 촬영하여 보관토록 함
17. 본 계약물건의 계약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과 지구 내 시설물의 변경, 단지 내 아파트 동별, 향,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도로소음 등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18. 실 대지측량 결과, 관련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사업시행인가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물건의 기본주택(모델하우스), 단지 배치, 단지 내 도로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 별 위치, 단지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상의 구축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19.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선형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20. 입면 차별화 및 기능개선이 용이한 평면으로의 사업승인변경 등으로 인하여 옥탑, 지붕, 측벽, 입면(전후면 창호와 난간, 거실과 안방의 벽체와 발코니 날개벽의 길이 및 높이 등)등의 디자인의 변경과 일부동의 세대발코니에 장식 등이 부착될 수 있으며, APT 문양은 현장 시공시 변경 될 수 있음
21. 세대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절차 즉 준공 시 확정 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이 경우 상호 정산 또는 부대, 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음
22. 본 단지의 명칭, 동표시, 외부색채와 그래픽은 해당관청과 협의하여 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변경 시에는 입주자 사전점검시 별도로 통보할 예정이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3.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음
24. 본 아파트의 기능 및 구조개선을 위해 설계변경이 추진 될 수 있으며, 관련법규(건축법,주택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치 아니함.
25. 마감자재내용은 주택형별에 따라 약간의 차이가 있으니 기본주택을 참조하시기 바람5
26. 일반 분양시에 제시된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등 각종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사업시행인가 또는 설계의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인 재개발 조합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함
27.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공간을 1층으로 적용하여 층·호수를 산정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층별분양가를 산정함
28.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확장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은 아파트 계약시 별도 상담으로 진행할 예정이며, 확장시공을 원하는 입주자들은 분양시 공개된 금액 범위내에서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시공상에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계약이 불가함
29.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시 구조체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30. 발코니 확장에 관련된 법규에 따라 계획 되었으나 대관협의 시 인허가권자의 상이한 해석에 따라 평면에 대피공간의 추가계획으로 평면계획이 변경 되어 질 수 있음
31. 대피공간의 창호는 열림방향이 변경될 수 있음
32. 각 세대의 발코니에는 필요시 선흠통 및 드레인 등의 위치, 개소 등이 변경 시공되어질 수 있음
33.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발코니)은 실 시공 시 다소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34.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은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이 실시공 시 인허가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음
35. 발코니난간 및 발코니사시의 형태 및 사양은 인허가 협의 완료 후 변경될 수 있음.
36. 계약 이후 입주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함
37. 각 주동의 코아(엘리베이터/계단실/복도) 형태는 주동타입에 따라 4호세대 코아의 다른 형태로 계획되어 있어 채광 및 복도 크기 등의 조건이 상이함을 인지함
38. 주출입구 및 부출입구 경비실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음
39. 측량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층고, 일부 지하주차장 레벨, 램프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40. 발코니에 설치되는 드레인 및 선흠통의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확장 시 선흠통 배수관을 가리기 위한 벽체가 일부 돌출되어 설치됨
41. 단지에 설치되어지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방안에 대해서는 실 입주 후 (가정)주민자치협의기구에서 결정하여 운영되어지며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함
42. 지상 주차장 및 지하주차장의 사용에 대하여 현재의 배치 및 이에 따른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함
43. 단지와 외부 도로사이의 경계담장은 행정관서의 지침에 의해 재질이나 형태 등이 변경됨
44. 단지내외 도로(지하주차장 램프 포함) 및 단지 내 비상 차로 등에 인접한 일부 세대에는 차량 소음 및 불빛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각종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
45. 아파트의 주거공용면적(계단실 코아) 및 기타공용면적(부대복리시설, 기계실, 주차장 등)은 각 단지별 세대 전용면적에 따라 균등하게 계산 배분됨
46. 휘트니스, 골프연습장, 문고 등 부대복리시설의 집기류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7. 문고, **노인정**, 주민공동시설,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경비실 등 부대복리시설은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사**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통합, 사용자동선, 입면형태,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48. 인·허가 과정에 따라 대지경계선형의 변경이 있을 수 있음
49.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자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의 문제에 대해 충분히 인지함
50. 각 단지별 계획된 부대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주민운동시설 등)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음

51. 배치상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A, 정화조 및 쓰레기 분리수거함 인접세대에는 냄새 및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52. 지상도로가 없는 일부세대의 경우는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함
53. 본 아파트의 시공상 구조 및 성능 부분에 대하여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설계변경을 추진할 수 있음
54. 부대복리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평면, 입면, 색채, 재질, 간판, 조경, 설치위치는 인허가협의 후 변경 될 수 있음
55. 지하주차장 및 기타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는 변경 사용될 수 없음
56.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음
57. 지하주차장, 기계/전기실,정화조(배기구), 주민공동시설 등 부대복리시설은 실 시공 시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인허가협의 후 최종 확정 시공될 수 있음
58. 부대복리시설의 변경으로 인해 발생하는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 등의 변경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발생할 경우 이의없이 동의하며, 추후 통보 시 면적 및 지분이 변동될 경우 차이에 대해 정산토록 함
59. 아파트 지하 PIT층은 지반현황에 따라 레벨 및 평면, 구조형식 변경될 수 있음
60.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 및 구조물은 굴토후 지내력 시험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음
61. 세대별 대지지분은 해당 단지의 공동주택 대지면적에서 세대별 분양면적 비율로 배분 산정하였음
62. 계약 시 모델하우스 및 분양조건에 따른 설계변경, 실 대지 측량결과에 의한 설계변경, 기타 주택법 및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경미한 설계변경 사항에 동의함
63. 발코니 확장세대의 인접 또는 상부세대가 비확장 시에는 단열재 추가설치로 인하여 인접세대 발코니 부위의 벽체 및 **우물천정의 길이 및 깊이가 변경됨(벽체돌출 및 우물천정 깊이 감소)**
64. 발코니 확장 시 평면 및 형별 특성에 따라 청소용 수전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음
65. 발코니에 개별보일러가 설치되며, 보일러 설치에 따른 배관등이 노출 시공됨
66. 발코니에 환기시스템(장비)이 설치되며, 환기시스템에 따른 입면-창호,전등,환기구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수 있음.
67. 배봉산 근린공원으로 진입하는 단지내부로는 형성되지 않으며 기존의 단지외부 산책로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68. 배봉산과 접하는 부위의 옹벽높이는 추후 사업시행변경사항에 의해 변경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69. 단지내 설치되는 차별화 시설물이나 조경이 동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70. 단지 층수나 위치에 따라 옹벽이 설치되어 조망권이나 미관상의 저해 요인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71. 해당부지 동측 배봉산 아래는 시립대부지이며 조합과 관련이 없는 부서입니다.
72. 발코니 상부에는 펜분리형 렌지후드 또는 환기유니트가 설치 될 수 있습니다.
73. 세탁실 /보일러실은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74. 104, 106, 108, 114, 110, 112, 113, 114, 115동은 시립대부지의 옹벽이 2~10m 설치되어 저층세대는 시야를 가릴 수 있으니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업체명

- 사업주체명 : 전농제6구역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법인번호 : 264171-0006364)
- 시공업체명 : 삼성물산㈜ 건설부문(주택건설지정업 지정번호 제48호)

건본주택 안내

- 분양사무소 위치 및 분양안내 : 서울시 강남구 일원동 717번지 래미안 강남 주택전시관 [☎ 02-765-3327, 1588-3588]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 보상은 주택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적용됨
- 본 공고는 편집 및 인쇄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건본주택으로 문의하여 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